

# 제 안 설 명

(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)

-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 
문영민 의원입니다.
  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,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 
- 본 안건은
  - 2006년 12월 20일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2010년 8월 31일자로 시·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제정 목적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 
  - 현행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교육의정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및 ‘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발전’과 서울특별시의 교육·학예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
○ 또한 현행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전임교육위원과 현임교육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, 현임 교육위원의 경우 이미 2010년 9월 이후 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같이 동 조례는 제정 취지 및 그 내용과 필요성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하겠습니다.

□ 그 밖에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